2026-17호

공 고 문

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[2025.04.01.~2026.03.31.(1년)]의 도과 및 동기간 1개월 전 촉구 공문에도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아 해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26.03.31.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(기간 초과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)

----- 다 음 -----

1. 대상자

연번	이름	주소	생년월일	비고
1	방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51번길 88-22 ***	08.03.11.	
2	류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2번길 18-6 ***	08.03.17.	
3	박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16번길 55-14 ***	08.03.19.	
4	최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서로15번길 9-12 ***	08.03.26.	
5	김**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29번길 44-6 ***	08.03.28.	

2. 발급기간 : 2025.04.01.~2026.03.31.
3. 공고기간 : 2026.03.06.~2026.03.20.
4. 지참서류
   가.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)
   나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(3.5cm×4.5cm)
      ※ 접수할 수 없는 사진
         - 모자를 쓰거나 눈을 감은 사진
         - 현상·인화된 사진 외의 변형이 가능한 기타사진(이미지, 스티커, 복사사진 등)
   다.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문의 : 031-5191-6846 황승현

2026년 03월 05일

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장